

**건설사고 감축을 위한 안정정책 개선방안  
연구용역**

**제안요청서**

**2022. 4.**

**국 토 교 통 부  
(건설안전과)**

# 목 차

I. 연구용역 개요 .....	1
II. 용역의 배경 및 목적 .....	1
III. 용역의 내용 .....	4
IV. 용역 수행지침 .....	6
V. 참가자격 및 계약방법 .....	10
VI. 제안서 제출 및 작성 .....	11
VII. 연구용역 수행업체선정 방법 .....	12
VIII. 유의사항 .....	17
IX. 보안대책 .....	18

붙임 : 제안서 양식(서식 #1 ~ 서식 #7)

## I. 연구용역 개요

1. 용역명 : 건설사고 감축을 위한 안전정책 개선방안 연구
2.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0개월(300일)
3. 용역예산 : 100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 본 용역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 II. 용역의 배경 및 목적

### 1. 용역의 배경

#### □ 그 간의 건설안전 정책

- 정부는 건설현장 사고사망 등 재해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다양한 안전정책을 수립하고 시행 중
  - \* 17년부터 「중대 산업재해 예방대책」('17.8) 등 정부합동 종합대책 6회, 「타워크레인 중대재해 예방대책」('17.11) 등 분야별 맞춤형 대책 6회
  - 특히, '18년부터 산업재해 사고사망자 절반감축을 목표로 추진 중이나 최근 부실시공 등으로 대형사고가 발생하는 등 아직 뚜렷한 성과는 미흡

※ 「국민생명지키기 3대(교통사고·산업재해·자살예방) 프로젝트」 (18.1월~)

- 3대분야 사망자 절반 줄이기 ☞ (교통사고) ('16) 4,292명→('22) 2,000명  
△(산재사고) ('16) 969명→('22) 500명 △(자살) ('16) 13,092명→('22) 8,727명

## □ 타 산업과의 비교

- 산재 사망사고의 업종별 비중을 살펴보면, 건설업의 사고 사망자 수가 전체 산재사고 사망자 수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사고사망만인율은 4배 이상 높은 수준



## □ 해외 건설사고 현황

- 주요 건설안전 선진국(영국, 싱가포르)의 사고사망만인율은 국내의 약 1/10 수준이며, 지속적인 감소추세이거나 유지중

### <주요 건설안전 선진국의 건설업 사고사망 현황>

(단위: 명, 20년 기준)

구분	한국	싱가폴	영국	일본
사망자	458	9	39	258
사망만인율	2.00	0.22	0.18	0.64

## 2. 용역의 목적

### □ 해외 선진 건설안전 정책 조사를 통한 개선방안 도출

- 그 간 대책의 이행과 현장 안전관리 노력에도 불구하고, 목표한 국내 건설사고 감소에는 한계가 있어
- 해외 선진 안전정책 및 조직 등을 조사하고 그 이행구조 및 효과성 등을 분석하여 시사점 도출 필요

국가	특징
싱가폴	우리나라와 유사한 체계로, <b>인력중심의 고용노동부(MOM)와 건설중심의 육상교통청(LTA)으로 구분하고 우수기업 인센티브 제도 운영(ESS Assesment*)</b> * 매월 MOM, LTA의 현장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일정점수(65점) 미만이면 벌금, 이상이면 인센티브를 지급
영국	CDM*을 통해 발주자를 중심으로 <b>시공 전에는 설계자, 시공 이후에는 시공자가 안전관리를 총괄하며, 발주자가 직접 안전전문가 선임</b> * 영국의 건설안전 법령은 MHSW(전 산업), CDM(건설업), CHSW(건설산업)으로 구성되며 산업보건안전청에서 주관
일본	<b>노동안전위생법에 따라 5년마다 정책의 수립을 의무화하여 체계적으로 입안·집행. 원도급자가 안전관리를 총괄하고 작업주임자를 선임하여 위험작업의 관리 강화</b>

○ 국내 문헌조사만으로는 세부적인 안전정책 및 실제 현장에서의 안전제도 작동실태 등을 면밀히 파악하기 어려운 한계

- 현지 기관 방문조사·화상회의 등을 통해 선진 안전정책의 노하우를 학습하고, 지속적인 정보공유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추진

\* 1개국 이상 현지 방문조사 외 비대면(zoom 등) 화상회의를 활용해 다양한 국가들의 사례조사 실시

## □ 건설사고 현황 분석을 통한 건설안전 정책의 개선방안 도출

○ (규모별) '21년 산업재해 현황분석에 따르면 건설현장 사망사고 발생지는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인 소규모 현장이 71.5%를 차지

### <건설업 규모별 사고사망 현황>

(단위: 명, %)

규모	2천만원 미만	1억원 미만	50억원 미만	120억원 미만	800억원 미만	800억원 이상	분류등
417명	68	62	168	35	35	43	6
100%	16.3	14.9	40.3	8.4	8.4	10.3	1.4

- 현장 점검의 대폭 확대에도 불구하고 민간 소규모공사 등 제도 이행력이 미치지 않는 분야에 대한 정책 개선방안 도출

- (유형별) 떨어짐에 의한 사망자가 59.5%, 부딪힘에 의한 사망자가 8.9% 차지하는 등 후진국형 사고가 다수 차지

**<건설업 재해유형별 산업재해 현황>**

(단위: 명)

유형	떨어짐	부딪힘	물체에 맞음	깔림 뒤집힘	무너짐	기타
417명	248	37	30	26	25	51
100%	59.5	8.9	7.2	6.2	6.0	12.2

- 사고유형 및 원인 분석을 통한 건설안전 정책 및 안전관리 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도출

**□ 부실시공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강화 방안 도출**

- 조직·인력 여건상 모든 현장에 대한 점검 활동도 사실상 곤란하며,
  - 발주·시공·감리자의 현장관리 부실, 품질관리 부실 등 책무 소홀에 대한 적기 대응이 어려움

⇒ 국내 사고사례 분석 및 해외 선진정책 사례를 종합하여 안전 관리 강화방안 및 현장에서의 제도이행력 확보 방안 도출

### III. 용역의 내용

#### 1. 용역의 범위 및 주요내용

**□ 해외와 비교·분석을 위한 국내 건설안전 현황 분석**

- 국내 건설안전 정책 및 관련 법·제도 현황 분석

\* 국토교통부 「건설기술진흥법」,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등

- 건설안전 관련 정부 조직 및 산하 지원조직의 안전관리 체계
- 규모별, 유형별 등으로 구분한 건설현장 사망사고 현황 분석

## □ 해외 건설안전 정책·조직·현장이행 조사·분석 및 시사점 도출

- 영국, 싱가포르,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의 건설안전 정책 및 법·제도 조사
  - 각국의 건설안전 관련 제도의 배경, 핵심개념, 체계, 특징, 안전전문가의 명칭, 적용대상, 위반 시 벌칙 수준, 인센티브 제도 등 세부항목 비교분석
- 해외 감리 업무, 시공품질관리 업무의 체계, 조직 등 법·제도 조사·비교분석 및 현장에서의 제도 이행실태·관리방안 조사
- 영국, 싱가포르,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의 건설재해 발생현황과 재해의 감소경향으로부터 건설사고를 효과적으로 감소시킨 요인 및 국내 적용을 위한 시사점 분석
- 현지 기관 방문조사 및 비대면(zoom 등) 화상회의를 통한 선진 안전정책 노하우 학습 및 협력 네트워크 구축 추진

## □ 건설안전 정책 개선방안 제시

- 국내 건설현장 사고 원인 분석 및 해외 안전정책의 이행구조·효과성 등 분석·벤치마킹을 통한 국내 법·제도 개선방안 제시
- 해외 스마트 안전정책의 발굴로 건설안전의 스마트化 추진방안도 모색하여 안전정책 개선안에 포함
- 안전정책의 이행력 및 효과성 등을 체감할 수 있도록 정부·업계의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실무 중심의 구체적 개선안 연구

## 2. 용역 수행일정 및 체계

### □ 용역 수행일정

과업 내용	과업수행기간(10개월)										과업량
주요 과업 내용	'22년					'23년					소계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100%
가. 해외와 비교·분석을 위한 국내 건설안전 현황 조사	■	■	■	■	■						30%
나. 해외 건설안전 정책·조직 조사 및 시사점 분석		■	■	■	■	■	■	■	■	■	30%
다. 건설안전 정책 개선방안 제시							■	■	■	■	40%
보고일정	착수보고		중간보고			최종보고					

### □ 용역 수행체계

- (국내 건설안전 정책 조사) 최근 법·제도 개정사항 등 현황을 조사·분석하고 관련 기관 및 건설현장 간담회를 통해 실무의견 청취
- (해외 선진정책 조사) 문헌 및 인터넷 조사, 해외 현지출장 또는 관계자 인터뷰 등을 통해 해외 선진정책을 조사하고, 국내 적용을 위한 시사점 분석
- (건설사고정보의 수집) CSI를 운영 중인 국토안전관리원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한 사고정보 확보
- (실무간담회 및 자문 등 시행) 실무중심 간담회를 통해 실효성 있는 구체적 정책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작성된 개선방안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위하여 전문가 자문 시행
- (연구실적 주기적 점검·보고) 연구추진 현황과 작성방향의 적정성 검토를 위한 주기적인 발주처 보고(착수, 중간, 최종보고 등)를 통해 차질 없는 과업 수행



## IV. 용역 수행지침

### 1. 일반사항

- 가. 본 과업의 수행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0개월(300일)로 한다.
- 나. 과업수행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세부과업의 담당자 명단, 과업일정계획 및 기타 필요한 제반서류 등을 작성하여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동 계획에 의거 전체 과업을 차질 없이 수행하여야 한다.
- 다. 과업수행은 과업지시서의 내용에 따라야 하며, 과업수행자는 과업일정계획에 의거 매 익월 5일까지 전월까지의 추진 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라.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을 위해 학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인력을 확보하여야 하며, 전문인력은 자기가 가진 지식과 경험을 최대한 활용하여 과업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 마. 과업수행 중 참여 연구진을 교체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발주처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바.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한다.
- 사. 과업지시서의 용어는 일반적인 통념에 따라 해석하며, 발주처와 과업수행자간의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때에는 발주처의 지시에 따른다.
- 아. 용역계약 후 과업내용에 현저한 변동이 있을 때에는 예산범위 내에서 계약당사자간 실정에 따라 설계변경 할 수 있으며, 과업 지시 내용 및 용역비의 변경은 계약당사자간 협의하여 결정(변경)하여 정산할 수 있다.
- 자. 과업수행을 위하여 관계기관과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처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처는 적극 지원해야 한다.

- 차. 과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학계 등 관계전문가의 자문의견을 청취·반영 검토하여야 한다.
- 카. 과업수행과정에서 생산된 보고서 및 조사자료 등 과업성과품에 대한 판권 및 모든 권리와 과업수행을 위해 구입한 각종 자료 등은 발주처가 소유하며, 모든 성과품은 발주처의 승인 없이는 제3자에게 대여할 수 없다.
- 파. 과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나 과업지시서에 누락된 경미한 사항은 과업수행자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 2. 세부사항

- 가. 용역수행 중 연구내용의 일부를 다른 기관에 위탁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위탁기관, 연구내용과 범위 등을 발주처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 나. 용역수행 중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았거나, 중요한 결정 또는 판단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처와 사전 협의하여 방침을 정하여야 한다.
- 다. 연구진행에 대해 발주처의 설명요구가 있을 때에는 연구용역 책임자와 각 부문별 책임연구원이 참여하여 연구내용을 설명하고 발주처의 수정·지시사항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라. 연구과정에서 취득한 제반자료와 정보에 대하여는 과업수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임의로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임의유출에 대한 책임은 용역수행자에게 있다.
- 마. 용어는 한글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전문용어 또는 뜻이 혼동 되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괄호를 사용하여 한문·영문 등을 표기하여야 하며, 용어의 뜻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용어의 정의를 하여야 한다.

### 3. 설계변경 조건

- 가.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항이 발생하여 정상적인 과업의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 나. 발주처의 방침에 따라 과업이 중단되었을 경우
- 다. 계획의 변경으로 과업내용 및 물량이 증감되었을 경우
- 라. 기타 발주처의 사정으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 4. 보고 및 보고서 제출 등 성과관리

- 가. 착수계 및 예정공정표 : 계약 후 7일 이내에 착수계 및 예정 공정표를 제출하여야 함
- 나. 착수보고 : 계약 후 1개월 이내에 세부연구항목, 연구수행 방법, 추진일정계획, 각 분야별 참여인력 등을 포함한 세부 과업 수행계획을 작성하여 보고하여야 함
- 다. 진도보고 : 용역수행자는 매월 말을 기준으로 용역추진 상황을 작성하여 용역진도 보고를 익월 5일까지 제출하여야 함
- 라. 중간보고 : 과업착수 후 4개월 이내에 중간성과를 정리하여 보고 하여야 함
- 마. 최종보고 : 최종보고서(안)은 과업종료 한달 전에 보고하고, 최종보고서는 준공일까지 제출하여야 함
- 바. 수시보고 : 본 과업의 추진상황에 대하여 발주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보고
- 사. 과업 성과품 제출

구 분	규 격	면 수	인쇄방법	부수
중간보고서	10절	100면 내외	마스타	3부
최종보고서	10절	200면 내외	마스타	3부

## 5. 기타사항

- 가. 용역 결과의 지식재산권은 국토교통부와 용역수행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되, 국토교통부가 용역결과물을 대국민 공개한 이후에 용역 수행자가 복제, 배포, 개작, 전송 등의 사용·수익을 할 수 있음
- 나. 기타사항은 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독관과 협의 조정 하되 조정되지 않을 경우 발주처의 지시를 따르도록 한다.

## IV. 참가자격 및 계약방법

### 1. 입찰참가자격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나.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에 해당하는 자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따른 유자격자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입찰참가자격 등록한 자

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 가능하며,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음(입찰참가시 확인서 제출)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에 의한 예외사항에 해당되므로 비영리법인인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법인 설립허가서 등 증빙서류 제출

※ 공동수급체(공동이행방식)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 구성 등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라야 함

### 2. 계약방법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 추진

## V. 제안서 제출 및 작성

### 1. 제안서 제출 방법

- 가. 제출기한 : 입찰공고문 참조
- 나. 제출방법 : 온라인 제출
- 다. 과업내용 및 제안요청서 문의 :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044-201-3563)
- 라. 제출서류 : 입찰공고문 참조

### 2. 제안서 작성에 관한 사항

#### 가. 일반사항

- 과업제안서는 아래 내용이 포함되도록 정확하고 명료하게 작성하되 필요시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음.
  - 과업제안 개요 (배경, 목적, 주요내용 및 기대효과 등)
  - 과업수행계획 (과업 세부내용, 수행방법, 세부추진계획 등)
  - 추진일정 등
- 제안서는 표지를 제외한 A4용지 30매 이내로 하며 아래한글로 작성하며 세로쓰기를 원칙으로 함. (단, 불가피한 경우 A4 크기로 접어서 포함시킬 수 있음)
-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제안 내용의 근거자료 및 참고자료 등을 첨부함
- 발주기관이 필요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체결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자 부담으로 함

## 나. 제안서 효력에 관한 사항

- 제안서는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제안서와 계약서가 상이한 내용인 경우 계약서가 우선함
- 계약 후에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제안자는 일체의 손해 배상 등의 책임을 져야 함
- 본 제안요청서 및 이후 제안서 제출까지 발생하는 모든 사안에 대하여 외부에 공개해서는 아니 됨

## VI. 연구용역 수행업체 선정방법

### 1. 선정방식 및 절차

#### 가. 선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의 85%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 협상적격자를 대상으로 입찰가격평가 점수와 기술능력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종합순위를 정하고, 1순위 부터 협상을 통하여 용역수행업체를 선정
  - \*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미만인 경우 협상적격자에서 제외

## 나. 선정절차

### (1)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산출

- 평가비율 : 기술평가(80%), 가격평가(20%)
- 종합평가점수 = 기술능력평가점수 + 입찰가격평가점수
- 동점시 처리방침
  - 종합평가점수가 동점인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 선정

### (2) 기술평가

- 기술제안서 평가는 제안서 내용에 대하여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 (3) 가격평가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따라 평가 점수 산출
  - 입찰가격 평가는 기술제안서 평가 후 지정된 장소에서 평가

### (4)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순서

-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의 85%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
  -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 종합평가점수(기술평가 점수+가격평가 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
  -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 결렬시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음



## 2. 평가기준

### 1) 평가항목 및 배점

구 분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 점	평가방법
제안업체 일반현황 (20)	재무구조 · 경영상태	- 자산, 자본, 부채비율 등(정부출연연구기관, 대학부설연구소, 국공립연구기관의 경우 5점 부여)	10	계량평가
	연구인력	- 연구인력(석, 박사 등) 보유현황	10	"
과업수행 부 분 (80)	제안서 개 요	- 제안의 배경 및 목적, 제안의 범위 및 기대 효과 등에 대한 이해	10	비계량 평 가
	과 업 접근방법	- 연구용역 수행을 위한 접근방법 및 기법의 우수성 - 연구수행 범위 설정의 적절성 - 연구수행 방법의 구체성과 논리성 - 문제점 분석 및 해결방법의 접근방법 - 유사 연구용역과의 중복 및 병행 가능성	20	"
	수행계획	- 연구용역 추진일정 · 방법 및 세부 추진 계획의 적정성	15	"
	용역관리 및 사후관리	- 제안자의 품질보증능력(위험관리, 진도관리, 보안관리, 문서관리 등의 적정성) - 과업종료 후 협조 및 지원방안의 적정성	15	"
	연구조직 구 성	- 수행조직의 구성 및 업무분장 적절성	10	"
	기 타	- 현실 반영성 및 새로운 아이디어 제시	10	"
계			100	

## 가. 계량평가 분야 항목별 평가기준

### 1) 재무구조·경영상태(10점)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점수
AAA	-	AAA (회사채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10
AA+, AA0, AA-	A1	AA+, AA0, AA-(회사채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9.7
A+	A2+	A+ (회사채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9.4
A0	A20	A0 (회사채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9.1
A-	A2-	A- (회사채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8.8
BBB+	A3+	BBB+ (회사채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8.5
BBB0	A30	BBB0 (회사채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8.2
BBB-	A3-	BBB- (회사채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7.9
BB+, BB0	B+	BB+, BB0 (회사채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7.6
BB-	B0	BB- (회사채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7.3
B+, B0, B- 이하	B-이하	B+, B0, B- (회사채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7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기준으로 적용률을 고려하여 배점 내에서 평가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미제출 시 0점)

※ 공동수급 시 참여업체의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업체별 평점을 산정한 후 제안 참여 지분율을 적용하여 합산  $\text{평점} = \sum(\text{업체별 평점} \times \text{지분율})$

### 2) 연구인력 보유현황(10점)

구 분	7인 이상	5~6인	3~4인	3인 미만
점 수	10	9	8	7

※ 석사·박사급 참여 연구인력 수

## 나. 비계량평가 분야 항목별 평가기준

구 분		배점 (A)	평가정도				
			매우우수 (점수=A×1)	우수 (점수=A×0.8)	보통 (점수=A×0.6)	다소 미흡 (점수=A×0.4)	미흡 (점수=A×0.2)
과업수행 부 분	제안서 개요	10	10	8	6	4	2
	과업 접근방법	20	20	16	12	8	4
	수행계획	15	15	12	9	6	3
	용역관리 및 사후관리	15	15	12	9	6	3
	연구조직 구성	10	10	8	6	4	2
	기 타	10	10	8	6	4	2

## 다. 기술능력평가 점수 산정

- 평가점수 : 기술능력 평가항목별 득점의 합계 × 80%

## 2) 입찰가격 평가

### 가.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text{○ 평점} = \text{입찰가격평가배점한도} \times \left( \frac{\text{최저입찰가격}}{\text{해당입찰가격}} \right)$$

-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
- \* 해당입찰가격 : 당해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
- \* 입찰가격 평가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 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begin{aligned} \text{○ 평점} &= \text{입찰가격 배점한도} \times \left( \frac{\text{최저입찰가격}}{\text{추정가격의 80\% 상당가격}} \right) \\ &+ \left[ 2 \times \left( \frac{\text{추정가격의 80\%상당가격} - \text{해당입찰가격}}{\text{추정가격의 80\%상당가격} - \text{추정가격의 60\%상당가격}} \right) \right] \end{aligned}$$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

\* 해당입찰가격 : 해당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

\* 입찰가격 평가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한 계산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VII. 유의사항

### 가. 가격입찰방식(전자입찰)

- 가격입찰 방식은 전자입찰이며, 가격제안서의 금액은 총액(부가가치세 포함)으로 기재

### 나. 청렴계약이행 준수 및 서약서 제출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기관은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등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 대표자의 직인이 날인된 『청렴계약서』를 제안서 제출 시 첨부하여야 함

## 다. 보안준수 및 보안서약서의 제출

- 본 제안과 관련하여 습득한 우리부의 제반 업무내용에 대해서는 제안서 제출의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외부에 누설·공개할 수 없음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기관 등은 『보안서약서』를 입찰 참여시 제출하여야 함

## IX. 보안대책

- 가. 용역수행기관의 대표자는 과업착수와 동시에 국토교통부 보안 업무규칙에 의한 보안각서를 제출하고 과업참여자에 대한 보안 각서는 과업수행기관 대표자 책임 하에 착수보고서 제출 시에 징구·제출 하여야 한다.
- 나. 보안사항의 누설과 관련 자료의 도난, 분실, 기타 손괴 등을 방지하고 제반보안사항의 조치를 강구 또는 감독하기 위해 정·부 보안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 다. 국토교통부 보안업무규칙에 따라 과업감독관은 과업종사자에게 정기적으로 보안교육을 실시하며, 보안대책 이행여부를 월 1회 확인한다.
- 라. 과업수행 중 과업참여자를 교체할 경우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외부유출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한다.
- 마. 과업종사자가 교체되거나 과업 종사자 이외의 자에게 부득이한 사정으로 성과품 등 관계 자료를 취급하게 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보안각서를 징구 후 취급토록 하여야 한다.

- 바. 보안이 요구되는 과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작업실을 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외부인의 출입을 금하도록 하여야 한다.
- 사. 과업수행과 관련된 자료는 본 과업 이외의 여타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없으며, 발주처의 서면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하거나 외부에 공개할 수 없다.
- 아. 과업의 보안유지를 위하여 자료보관함은 별도로 비치하되 비밀, 대외비 및 일반자료 보관함으로 구분하고 자료 및 성과물의 중요도에 따라 비밀, 대외비 및 일반자료로 분류·관리하여야 한다.
- 자. 과업수행상 발생한 자료 등의 폐기물은 정·부 보안관리책임자 책임 하에 완전 소각하여야 한다.
- 차.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된 성과물을 인쇄하고자 할 경우에는 과업수행 감독관 입회 하에 정부 비밀취급인가 업체에서 발간하여야 하며, 성과품에는 발간근거를 명시(업체명, 인가근거, 참여자, 발간일자)하고 원지·폐지 등을 완전 회수·소각하여야 한다.
- 카. 연구과정에서 발생한 각종자료와 용역성과품은 용역준공 시 전부 납품해야 하고, 성과품을 추가 인쇄하여 보관해서는 아니 된다.
- 타. 용역계약자는 용역수행과정에서 취득한 내용을 임의로 사용하여 국가가 손해를 입었을 때에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 파. 기타 보안과 관련된 사항은 국토교통부 보안업무규칙(2017.7.13.) 중, 제54조 용역업체에 대한 보안사항을 준수한다.

## 보안서약서

본인은       년       월       일       귀부와 계약 체결한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및 과업지시서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함은 물론 용역과업 수행전에 용역참여자 전원에게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서약서를 징구하여 용역 시행부서에 제출하겠음.
2. 본인이나 직원이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 시켰을 경우에는 보안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고 회사에 대한 용역업의 등록취소,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 어떠한 처분을 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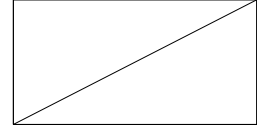
소속 :

직위 :

성명 :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서식 #1] “제안서 표지”



# 과업제안서

용역명: 건설사고 감축을 위한 안전정책 개선방안 연구

업체명 : (인)



[서식 #2]

## 서 약 서

상호(법인)명 :

주 소 :

본인은 「건설사고 감축을 위한 안전정책 개선방안 연구용역」에 참가함에 있어 귀 부가 결정한 평가결과를 수용하고 평가와 관련하여 추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2. . .

상 호 :

대표자 성명 : (인)

주민등록번호 :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서식 #3]

## 제안업체(기관) 일반현황

1. 회사(기관)명		2. 대표자	
3. 용역등록 분야			
4. 주소			
5. 대표 전화번호			
6. 설립연도	년    월    일		
7. 주요연혁			
8. 매출액	2019년	2020년	2021년
9. 상시 종업원 수			
10. 징계사항			

[서식 #4]

## 관련연구분야 인력현황

분 야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위	주요경력(관련분야)	학위 또는 자격사항

주) 연구인력 평가를 위한 자료로 해당업체의 관련 연구인력(석·박사) 보유현황

## 용역(연구) 수행실적

(금액단위 : 백만원)

건 명	개 요	용역금액	발주처	계약일	착수일	준공일	비고

- 주) 1.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준공한 책임연구원의 관련연구 보고서 및 논문실적을 일자 순으로 기재 (학위연구논문 제외)  
2. 하도급 실적은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경우만 기재하고 비고란에 주계약자를 기재  
3. 공동도급의 경우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서의 지분만을 기재  
4. 계약서, 실적증명서 등 증빙자료 첨부

## 본 과업 연구진 총괄표

분 야	성명	주민등록 번호	직위	주요경력 (관련 분야)	학위 및 자격사항
책 임 연구원		(예시) 123456 -1*****			
공 동 연구원					
연 구 보조원					
보조원					

주) 1. 본 과업 관련 주요경력만 기재할 것.

2. 연구진은 과업에 참여하는 인원 전부를 기재할 것.

3. 박사 학위 소지자는 상기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아래 서류의 원본 또는 사본을 필히 제출할 것

※ 필수제출서류 : 자격증 또는 학위수여증명서, 제안서제출기관에 소속함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

## 연구진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책		연 령	세
학 력	대학교(원)	전공	해당분야 경력		년 월		
본 용역 참여임무				학위 또는 자격사항			
주 요 경 력							
용역명 (논문명)	참여기간 (년월 ~ 년월)		담당업무	발주처	비 고		

- 주) 1. 【서식 7】의 본과업에 참여하는 연구진만 작성  
 2. 본 과업 관련 경력만 기재할 것.  
 3. 박사 또는 석사 학위취득시기와 관계없이 당해 과업 관련분야 연구경력 기재

## 청렴계약서

당사는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설계·감리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아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손해배상액을 지불 하겠습니다

1.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5

2.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10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하는 등의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여 2개월 내지 8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을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날부터 4개월 내지 1년 4개월 동안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4.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및 국가계약법시행령 제4조의2제1항각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으며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발주기관에서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이를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5. 회사 임·직원이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 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6. 본 건 입찰·계약체결·계약이행 및 준공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 등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 음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 제출, 서류열람, 현장확인 등의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7. 본 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수급인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경우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또는 계약해지 등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2.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